

보다 안전한 미래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우)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수서동, 로즈테일오피스텔 1828호) / Tel 02-567-1307/ Fax 02-567-1337
www.assi.or.kr E-Mail : assi1307@naver.com 담당 : 박용복국장 (H·P) 010-8688-5619

문서번호 시험 2019 - 174호

시행일자 2019. 8. 9.

수 신 행정안전부 장관

참 조 재난안전담당관

선 결			지 시		
	일 자			결 재 · 공 람	
접 수	시 간				
	번 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책임기술자 제한에 따른 입장 요청

1. 국가 시설물의 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동법 시행령 제 9조에 따르면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 부 산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 내진성능평가용역을 발주하면서 대부분의 용역 입찰 조건에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 내진성능평가용역의 발주근거는 「시설물 안전법」과 「지진·화산재해 대책법」(이하 ‘지진대책법’)으로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이를 규정한 「시설물 안전법」을 준수하고, 건축구조기술사를 포함한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자격+경력+학력+교육) 등급을 규정한 「건설기술진흥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4.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자 보유가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규모가 작은 소규모 시설물에까지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하여 관련법의 안전성을 훼손하고 오히려 부실용역과 불법하도급을 조장하고 있으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법정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기회를 박탈하고 다수의 경험 있는 건축구조기술사들의 설 자리를 잃게 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대하여 현재까지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입장을 요청하오니 적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학교시설물을 관리하는 교육부에서는 ‘건축구조기술사’로 제한한 입찰참가자격조항을 철회토록 하였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첨부 : (1) 동대문구청 발주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용역’ 입찰서 1부. 끝.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